

## 오정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에대한의견안심사보고서

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00. 11. 7

나. 제출자 : 부천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00. 11. 7

라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82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(2000. 11. 9) 상정 의결

### 2. 제안설명요지

(제안설명자 : 도시과장 전영표)

#### □ 제안이유

-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226번지 일원은 서민위주의 소규모주택군 및 공장 등이 입지하고 있는 전형적인 노후불량주거지역으로서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주택 등이 무질서하게 밀집되어 있어 주거환경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재해위험이 많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코자
- 도시계획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듣고자 함

#### □ 주요내용

- 오정동 226번지 일원 135,211㎡(40,900평)에 대하여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고 향후 개선계획을 수립하여
- 환경정비 및 기반시설확보, 재해방지측면에서 노후불량주택을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도시저소득 주민의 복리증진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

#### □ 관련근거

-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3조의 규정
- 도시계획법 제22조제5항의 규정

#### □ 참고사항

- 주민의견 청취결과
  - 공람기간(2000. 10. 5~10. 20)
    - 제1회 경인일보 : 2000. 10. 5일부터 14일 간
    - 제2회 수도권일보 : 2000. 10. 5일부터 14일 간
  - 주민의견 : 1건
- 제5회 부천도시계획위원회 심의
  - 심의일시 : 2000. 11. 2
  - 심의안건 : 오정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 자문
  - 심의결과 : 원안통과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 내 용	답 변 내 용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오정주거환경개선지구 내의 세대수와 임대주택수는?</li> <li>○ 세입자수보다 임대주택수가 더 많아야 한다고 보는데?</li> <li>○ 국·공유지는 얼마인가?</li> <li>○ 시의 지원책은 무엇이 있는가?</li> <li>○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일반사업자가 개발하는 것과 달리 이익을 남기지 말아야 하는데 이익발생 부분은 주민에게 어떻게 혜택이 주어지는지?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지구 내의 세입자수는 800여 세대이며 임대주택수는 508세대임</li> <li>○ 세입자수는 주민등록상 세대수로 지구지정 후 세부계획 수립시 조사하면 임대주택보다 적게 나올 것임</li> <li>○ 17%임</li> <li>○ 간설비인 도시계획시설비, 상·하수도비 등이 지원됨</li> <li>○ 분양가격이 낮아짐</li> </ul>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○ 없 음

나. 반대토론

○ 없 음

5. 심사결과

○ 찬성의견 채택

6. 소수의견 요지

○ 없 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 음

8. 첨부서류 : 의견서 1부.

오정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에대한의견서

의안번호	제404호	안건명	오정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에대한의견안
제 출 자	부천시장	의 결 연월일	제82회 부천시의회(임사회)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(2000. 11. 9)

오정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에대한의견

오정구 오정동 226번지 일원은 서민위주의 소규모주택군 및 공장 등이 입지하고 있는 전형적인 노후불량 주거지역으로서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주택 등이 무질서하게 밀집되어 있어 주거환경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재해위험이 많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함은 타당하며, 주거환경개선시 임대주택을 많이 확보하여 세입자가 전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은 물론 보다 많은 주민편익시설을 확보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한층 높여야 한다는 의견임

2000년 11월 9일

부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

오정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에대한의견안

의안번호	제404호
의결년월일	2000. 11. 15 (제82회)

제출년월일 : 2000. 11. 7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□ 제안이유

-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226번지 일원은 서민위주의 소규모주택군 및 공장 등이 입지하고 있는 전형적인 노후불량 주거지역으로서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주택 등이 무질서하게 밀집되어 있어 주거환경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재해위험이 많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코자
- 도시계획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듣고자 함

□ 주요내용

- 오정동 226번지 일원 135,211m<sup>2</sup>(40,900평)에 대하여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고 향후 개선계획을 수립하여
- 환경정비 및 기반시설확보, 재해방지측면에서 노후불량주택을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도시저소득주민의 복리증진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

□ 관련근거

-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3조의 규정
- 도시계획법 제22조제5항의 규정

□ 참고사항

- 주민의견 청취결과
  - 공람기간(2000. 10. 5~10. 20)
    - 제1회 경인일보 : 2000. 10. 5일부터 14일 간
    - 제2회 수도권일보 : 2000. 10. 5일부터 14일 간
  - 주민의견 : 1건
- 제5회 부천도시계획위원회 심의
  - 심의일시 : 2000. 11. 2
  - 심의안건 : 오정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 자문
  - 심의결과 : 원안통과

### 서면질문답변서

○ 서면질문서 제출

- 질문의원 : 박노설 의원
- 질문서 제출 : 2000. 11. 14
- 질문서 이송 : 2000. 11. 14
- 답변서 제출 : 2000. 11. 24

○ 질문 및 답변내용

GBT사와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 외자유치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오니 상세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00년 11월 9일 경기도에서 GBT사 외자유치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에 대한 사업설명회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.

**박노설 의원**

질 문 1

- 설명회에 참석한 자치단체를 말씀해 주십시오

답 변

- 서울특별시 폐기물과장 외 자치 25개 구청 청소과장이 모두 참석하였음

질 문 2

- 설명회의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.

답 변

- 경기도 교류협력과 배회동 전문위원이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사업 개요 및 추진사항 설명하고, 각 구청의 음식물쓰레기 발생량, 재활용량, 김포매립지 반입되는 양 중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로 반입가능물량을 제출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.

질 문 3

- 부천시에서는 누가 설명회에 참석하였으며 어떠한 역할을 하였습니까?

답 변

- 청소사업소 청소시설팀장이 참석하였으나 우리 시의 대표하는 발언이나 유인물 배포없이 배석하여 설명회를 청취하였습니다.

질 문 4

○ 설명회를 개최한 시간과 장소를 말씀해 주십시오.

□ 답 변

○ 2000. 11. 9(목) 14:00, 장소는 서울특별시 별관 8층 회의실에서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.

□ 질 문 5

○ 설명회의 진행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셨습니까?

□ 답 변

○ 경기도 교류협력과 배희동 박사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사업을 설명하고 각 구청 청소과장들의 질의 응답 후 설명회 마감하였습니다.

□ 질 문 6

○ 설명회 참가한 자치단체에서 제기한 문제점은 무엇이었습니까?

□ 답 변

○ 반입동의서 제출 후 반입물량의 변동이 생겼을 경우 책임은 없는지 여부를 질의하였으나 각 자치단체의 재활용량을 제외한 김포매립지 반입량을 기준으로 반입가능 물량만 제출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.

○ 그 외의 질의사항 없었습니다.

□ 질 문 7

○ 설명회 개최 목적은 무엇입니까?

□ 답 변

○ 반입동의서 제출 협조요청 및 자원화시설의 사업개요 설명이 목적이었습니다.

□ 질 문 8

○ 지난 10월 20일 부천시의회에서 GBT사와의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의자유치계약취소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80만 부천시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결을 무시하고 이와 같이 사업을 강행 추진해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답 변

○ 본 사업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.